

대표선수 선발 관리 규정

(사)대한철인3종협회

대표선수 선발 관리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철인3종협회(이하 "협회"이라 한다.)의 국가대표 임원선수의 공정한 선발과 효율적인 훈련운영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경기력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적용)

본 규정은 협회소속 국가대표(주니어대표, 꿈나무선수 포함) 및 임원(감독 및 코치)에 적용한다

제 2 장 경기 위원회

제 3 조 (설치근거 및 명칭)

본 협회 정관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한 특별 위원회로서 경기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 4 조 (기능)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, 심의 조정한다.(개정 2014)

1.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
2. 국가대표 강화훈련의 실시, 지도, 감독,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
3.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 사항

제 5 조 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4)

1. 위원장 1인
 2. 부위원장 약간 명
 3. 위원 13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- ②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출신 1인, 지도자 1인, 팀 관계자 1인, 시도 경기 단체임원 1인, 비경기인 1인, 여성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.
- ④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 관련 안건은 서면결의로 위원회 결의를 대신 할 수 없다. 다만, 선수의 부상,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 6 조 (위원의 임기)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경기단체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(개정 2014)

제 7 조 (위원회 구성시 준수사항) ①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(개

정 2014)

② 회장과 친족인자(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)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③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

제 3 장 지도자

제 8 조 (감독, 코치 선발)

국가대표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감독 및 코치(이하 "임원"이라함)는 지도자로서의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트라이애슬론과 관련된 제반 이론적 지식과 실기를 겸비한 자로서 경기위원회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

가. 남녀 국가대표팀 지도자

- ① 다년간 협회 등록 단체에서 선수 지도 경력이 있거나 5년 이상 선수로 활동하면서 경기력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국가관을 갖고 사명감과 연구 자세 등 선수의 경기력향상에 전력투구 할 수 있는 자
- ②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및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하는 경기 지도자 연수과정에서 1급 지도자 자격을 소유한 자. (단 2급 경기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자라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으나 선임 1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1급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.)

나. 주니어 상비군 및 국제대회 파견 지도자

- ① 3년 이상의 선수 경력 후 협회등록 단체에서 선수 지도경력이 있는 자
- ② 다년간 등록 단체에서 선수 지도 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 선수로 활동하면서 경기력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국가관을 갖고 사명감과 연구 자세 등 선수의 경기력향상에 전력투구 할 수 있는 자
- ③ 한국체육과학연구원 및 문화관광부에서 발급하는 경기 지도자 연수과정에서 1급 또는 2급 지도자 자격을 소유한 자
- ④ 제7조 "가"항 2의 자격을 소유한 자 및 협회의 지도자 자격을 소유한 자
- ⑤ 본 협회 경기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"나"항3의 적격자중 1, 2이외의 지도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.
- ⑥ 부득이한 경우 경기위원회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써 "나"항1~4의 지도자 이외의 자를 파견할 수도 있다.

제 9 조 (국가대표 지도자 선발방법)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, 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.(신설 2014)

② 선발과정 및 결과는 공개하여야 하며, 회의록 등 선발근거 자료를 최소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(신설 2014)

③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용 및 재임용 시, 해당 지도자의 평가보고서를 작성, 평가하고, 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(신설 2014)

제 10 조 (감독, 코치 선임 제한):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팀 소집 훈련에 소속 선수의 참여를 방해하거나 불허하는 지도자는 향후 대표팀 감독이나 코치로 선임하지 않으며, 각종 국제 대회에 지도자로서 파견하지 않는다.

제 11 조 (임기 및 역할)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신분 보장과 안정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임기(계약기간)를 보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대표 감독은 코치 및 선수 선발 선임 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으며, 위원회는 감

독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.(신설 2014)

제 12 조 (임무) 국가대표 지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(신설 2014)

1.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의 훈련 및 관리
2.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
3. 각 경기단체별 국가대표 훈련대상 선수선발 참여
4.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건의
5. 국가대표 훈련참가자의 해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시 인솔
6.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
7.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, 감독
8.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

제 4 장 선 수

- 제 13 조 (선발 절차) ①** 각 경기단체가 사전에 정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통하여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, 선발일정 등 세부내용은 경기단체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 단, 선발기준은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.(신설 2014)
- ②** 경기단체별 국가대표 선발기준은 최소한 국가대표 선발일 3개월 전에 확정하여 해당경기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.(신설 2014)

제 14 조 (선수선발)

선수로서 품위와 인격을 갖추고 우수한 경기력과 잠재력을 소유한 자 가운데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 보고한다.

- ① 년 1회 이상 실시되는 정기 선발전에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 자
 - 가. 대표선수 1진(19세 이상): [별지1]에 기준기록 테스트를 통과한 자로 전국체전에서 상위 순으로 완주한 남녀선수를 선발 한다.
 - 나. 대표선수 2진(19세 이상):
 - 1) [별지1]에 기준기록 테스트를 통과한 자로 전국체전에서 대표선수 1진을 제외한 남녀 각각 차상위로 완주한 선수한 자중 1위 선수의 기록의 8% 이내 완주한 선수를 선발한다.
 - 2) 연 2회 실시되는 경기력 테스트에 기준 기록[별지 1]을 통과한 선수 중 경기위원회가 선수의 잠재력이 크다고 인정한 선수를 선발할 수 한다.
 - 다. 주니어 대표(16세~18세):
 - 1) [별지1]에 기준기록 테스트를 통과한 자로 지정된 스프린트 코스 대표선수 선발대회에서 상위 순으로 완주한 남녀선수를 선발 한다
 - 2) 연 2회 실시되는 경기력 테스트에 기준 기록[별지 1]을 통과한 선수 중 경기위원회가 선수의 잠재력이 크다고 인정한 선수를 선발할 수 한다.
 - 라. 꿈나무(13세~15세): 소년체전서 상위 순으로 완주한 남녀선수를 선발한다.
- ② 부상, 경기력 부진 등 결원에 따른 교체 시 감독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, 선발전 최종성적 기준으로 상위성적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(신설 2014)
- ③ 위원장 또는 지도자 추천에 따른 선발은 최소화하며, 이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·의결을 거쳐야 한다. (신설 2014)
- ④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소속팀으로부터의 차출 시 대표선수의 원소속팀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.(신설 2014)

제 15 조 (대표 선수 선발 제한)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팀 소집 훈련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는 향후 2년간 대표선수로 선발하지 않는다. 또한 소집 훈련 거부 선수에 대하여는 올림픽 게임, 아시안 게임, 세계선수권대회, 아시아선수권대회에 파견하지 않는다.

제 16 조 (대표 자격 유지 기간)
대표 선수 선발된 선수는 제22조에 의한 징계 처분이나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경기력 테스트 기준 기록[별지1]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한 1년간 대표 자격을 유지한다.

제 4 장 국가대표 임원, 선수의 관리

제 17 조 (파견선수 선발)
올림픽, 세계선수권, 아시안게임, 월드컵대회 출전 선수의 선발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에 보고한다.

1. 현역 대표선수 중 국제연맹이 제시한 참가자격을 획득한 자.
2. 올림픽게임과 아시안게임의 경우 출전자격이 있는 자 중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당해 연도에 1회의 선발전을 실시하여 파견선수를 선발한다.
3. 종합경기대회에 앞서 출전예정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못할 시 선발전에서 차상위에 있던 선수로 교체하여 출전시킨다.
4. 대표선수 외에 세계선수권과 월드컵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출전을 희망하는 선수의 경우 출전자격을 획득한 자중 자비로 출전을 허용한다.

제 18 조 (국가대표 임원, 선수 선발 승인)
1. 본 협회에서는 제4조 "가"항과 제8조 "가"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임 원	선 수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력서 1부 -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 - 신상기록카드(소정양식) 1부 - 코치, 선수 경력증명서 1부 - 교체시 교체사유서 1부 - 경기위원회 회의록 사본 1부 (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) - 사진(명함판) 2매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상기록카드(소정양식) 1부 - 경기실적증명서 1부 - 대표코치 의견서 1부 (경기위원회 회의록 사본) - 사진(명함판) 2매 - 건강진단서 1부

2. 위 구비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임원 및 선수는 국가 대표 선발에서 제외 한다

제 19 조 (의 무)
임원 및 선수는 대한체육회와 본 협회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맡은바 훈련에 정진 하여야 하며 촌내·외 훈련 및 합동훈련 시간이나 사생활을 불문하고 신사도를 자랑하는 트라이애슬론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20 조 (선수촌 입촌 및 합숙)
임원 및 선수가 선수촌에 입·퇴촌과 합동훈련에 따라 합숙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입·퇴촌 시 제반준수 사항은 대한체육회의 지침에 의한다.
2. 입촌 및 입소 시에는 훈련에 필요한 용품 이외의 불건전한 서적 등 일상생활에 도 외시되는 물품 등은 일체 지참할 수 없다.
3. 입촌 및 입소를 명받은 임원 및 선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촌 및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.

제 21 조 (임 무)

대표 감독 및 코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본 협회에 주간보고서 작성 제출(소정양식)
- 강화훈련 참가코치 및 선수의 관리
- 훈련계획서 이행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
- 본 협회 강화훈련 선수선발 참여
- 경기위원회에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 건의
-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제출 (소정양식)
- 훈련 내용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결과를 당해 선수의 소속팀에 제출

소속팀 감독 및 코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소속팀에서 실시한 훈련 내용을 대표팀 감독에게 제출
- 소속팀 훈련시 [별지2]에 근거하여 선수들의 훈련성과 평가 결과를 대표팀 감독에게 제출

제 22 조 (임원 및 선수교체)

위원회는 선수단의 자질향상과 관리통제를 위하여 임원,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부상 및 경기력 저하로 인하여 임원, 선수로서 의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절차에 따라 임원 및 선수를 교체할 수 있다.

제 23 조 (결격사유)

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국가대표 임원 및 선수(주니어상비군 포함)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대표 임원 및 선수(주니어상비군 포함) 자격을 박탈한다.

- 선수폭력 또는 성폭력(성희롱 포함)을 사유로 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그 징계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국가대표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.
- 동 규정 제25조에 의하여 징계 조치된 자
- 선수촌 및 합숙소의 제반수칙을 위반한 자
- 신체 또는 정신질환으로 훈련을 수행할 수 없는 자
-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트라이애슬론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
- 2회 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자
- 감독, 코치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- 선수지도에 태만하거나 지도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
- 품행, 성격 기타사유로 단체생활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
- 전염병, 질병을 보유한 자
- 본 협회의 지시에 불응한 자

제 24 조 (훈련방법)

- 훈련방법은 촌내·외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.
- 필요 따라 소속팀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 이때 협회에서는 소속 팀별로 [별지 2]와 같이 훈련비를 지급한다. 단, 아시안게임, 올림픽 게임이 있는 해에는 예외로 한다.
- 훈련단의 권태감 해소 훈련효과의 증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한시적인 촌외 훈련 시에는 합동훈련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필요에 따라 남·여 분산훈련 방법으로 실시할 수도 있다.

제 25 조 (외출, 외박)

- 선수촌의 촌내 훈련 시 임원 및 선수의 개별적인 외출, 외박은 선수촌의 사전 승인 절차에 의하여 실시한다.
- 촌외훈련 및 합동 훈련 시에는 감독, 코치의 승인을 받고 소정의 지시에 따라야 한

다.

- 감독, 코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별 외출을 제한하여야 한다.

제 26 조 (수 칙)

국가대표(주니어상비군 포함)로서 훈련에 참가중인 임원 및 선수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임원 및 선수는 서로가 존중하고 예의를 지켜 명랑한 분위기 조성에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.
2. 훈련 팀의 기강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3. 건전한 오락 이외의 잡기는 절대로 금한다.
4. 팀의 숙소 내에서 음주나 흡연은 할 수 없으며, 외출 시에도 음주나 기타 행위로 불미스러운 일로 형사, 민사상의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본 협회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갖지 아니 한다.
5. 촌내·외 훈련 기간 중 훈련장 또는 숙소 내에서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 어긋나는 언행과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 27 조 (면 회)

1. 임원 및 선수의 면회는 감독, 코치의 승인 하에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.
2. 본 협회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 28 조 (징 계)

1. 본 협회에서는 강화훈련 참가자중 제18조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제2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, 선수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2. 징계의 종류는 경징계와 중징계로 한다.
3. 징계내용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견책, 근신으로 할 수 있다.
4. 선수촌의 규정 또는 본 규정 이행 위반으로 훈련 단 임원이나 선수에게 악영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위원장은 회장의 재가를 얻어 즉시 퇴촌을 명하고 그에 상응 하는 중징계를 상벌위원회에 상정한다.
 - 훈련에 태만하고 정당한 지도에 불복종한 자는 1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줄 수 있다.
 - 2회 이상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하거나 선수촌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한 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.
 - 징계는 감독의 요청으로 강화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재가를 받아 시행한다.
 - 특별한 사유 없이 대표팀 소집 훈련에 불응할 경우 2년간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한다.

제 29 조 (퇴 촌)

본 협회는 국가대표 임원, 선수가 전조의 각 조항 자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즉시 대한체육회에 퇴촌 승인요청서를 제출한다.

제 30 조 (세부지침)

본 협회에서는 대표팀 훈련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운영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 31 조 (포 상)

각종 국제대회에서 상위에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대표 선수단에게는 입상성적에 따라 예산이 허용하는 내에서 경기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(개정 2009)

제 32 조 (보고서 제출의무)

대표 선수단(주니어상비군 포함)은 훈련계획 및 훈련결과 평가 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제출 보고하여야 하며, 국제대회(초, 중고, 대학, 실업 파견 선수단 포함) 출전 시 훈련 및 경기진행 사항을 협회(사무국)에 보고하고 대회 종료 귀국 후 1주일 이내에 종합 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33 조 (평가보고)

위원회는 선수단의 훈련 평가보고서 및 국제대회 참가보고서를 토대로 연도 말에 종합평가, 심의하여 임원, 선수선발 및 파견에 따른 개선 및 시정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 칙

제 18 조 (불공정 행위)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선발과 관련된 불공정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 등)로 징계를 받은 자는 국가대표 강화훈련에서 제외한다.

제 19 조 (국가대표선발 규정 제·개정) ① 본 협회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준용하여 6개월 이내에 경기단체별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하여 한다.

② 본 협회는 제·개정된 국가대표 선발규정은 제·개정 후 즉시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국가대표 선발규정의 개정시기) ① 확정된 경기단체 국가대표 선발 규정의 개정은 규정 제·개정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 후에 개정할 수 있으며, 본 협회 이사회 의결, 확정 후 개정 내용을 대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다만,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1년 이내 제·개정이 필요할 경우, 반드시 사전에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자료의 보관) 국가대표 선발기준, 과정,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, 이의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근거자료(선발결과 기록지, 분석지, 및 회의록 등) 관련 자료를 최소 5년간 보관(관리)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(강화훈련) 국가대표 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.

제 34 조 부 칙(시행일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3월 27일 대한 체육회의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 한다.
2. (개정)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3. (개정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4. (개정)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1] 경기력테스트 기록 기준표

남 자

구 분	수영 400m	수영 1000m	달리기 3km	달리기 5km
꿈나무 13-15세				
주니어 16-18세	4분 40초		9분 45초	
U23		12분 00초		16분 30초
대표팀		12분 00초		16분 00초

여 자

구 분	수영 400m	수영 1000m	달리기 3km	달리기 5km
꿈나무 13-15세				
주니어 16-18세	4분 50초		11분 20초	
U23		13분 00초	11분 00초	
대표팀		13분 00초	10분 45초	

※ 사이클 테스트는 추후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가능

[별지 2] 개별 훈련비 지원 내역

1. 국가대표선수 훈련비 지원표

등 급	지 원 금 액
국가대표 1진(19세 이상)	월 50만원
국가대표 2진(19세 이상)	월 20만원
주니어 대표(16세~18세)	월 10만원
꿈나무(13세~15세)	유니폼

2. 지도비 지원표

등 급	지 원 금 액
국가대표 1진(19세 이상)	월 30만원

* 시니어 1진의 대표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지도자 중 협회가 요구하는 훈련 계획서 및 훈련 보고서를 제출한 지도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

[별지 3] 훈련 평가 보고서 양식

구분	평가 거리	1분기		
		1월	2월	3월
엘리트	수영 1000m			
	달리기 5km			
주니어	수영 400m			
	달리기 3km			
꿈나무	수영 200m			
	달리기 1km			